

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(제43조 관련)

명칭	관할구역
서울지방병무청	서울특별시. 다만, 제23조제4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병역조사과장의 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관할한다.
부산·울산지방병무청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
대구·경북지방병무청	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. 다만, 제31조의2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병역조사과장의 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전북특별자치도,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관할한다.
경인지방병무청	인천광역시 및 경기도
광주·전남지방병무청	전남광주통합특별시
대전·충남지방병무청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
강원지방병무청	강원특별자치도
충북지방병무청	충청북도
전북지방병무청	전북특별자치도
경남지방병무청	경상남도
제주지방병무청	제주특별자치도